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179
----------	-----

2023. 6. 13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6. 2. / 이정애 의원 등 12명
나. 회부일자 : 2023. 6. 2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6. 13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산과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,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2조)
-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지원대상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~제5조)
-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자동차 정비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인하여 축소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사업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

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. 1부.